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 ESG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(직무와 권한)

- ① 위원회는 회사가 경영의사결정에 ESG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환경,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정립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제11조의 내용과 같이 회사의 ESG 경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, 심의 및 검토한다
-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세 계획, 이해관계자의 니즈, 관련 위험 분석 및 사업기회도출 등 부의된 사안의 ESG관점에서의 적합성 및 실행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4 조(위원의 의무)

-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5 조(구성)

- ①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 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전체 위원 수중 3분의 2 이상을 독립이사로 하여야 한다.
 -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-

- ④ 위원의 임기 만료·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.
- ⑤ 제2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·사임 등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·의무가 있다.

제 6 조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 단, 초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이 유고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,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제5조 제3항 및 제5항은 위원장의 임기에 준용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7 조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6조 제4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하여 회의 개최일 직전일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9 조(의안제출)

- ① 위원회에 상정이 필요한 의안과 그 제안 이유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.
-

- ② 간사는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제11조 부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.

제 10 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.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1 조(부의사항)

-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 결의 안건
 - (1) ESG 경영 전략과 실행계획 수립
 - (2) 주요 ESG 단체나 기구 등의 가입
 - (3)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
 - (4) 사회공헌의 추진방향, 연간 사업계획의 승인
 - (5) 이사회 부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ESG 경영 전략 이행 자원 확보를 위한 기금 조성 또는 채권 발행
 - 2. 심의 안건
 - (1) ESG 실행 전략으로 이사회에 부의 되는 안건
 - 안전 / 기후 / 폐기물 / 자원순환 전략 실행, 지배구조 개선 등
 - 3. 보고 안건
 - (1) ESG 경영 전략 실행 성과
 - (2) 중대한 리스크 대응 현황
 - (3) 주요 외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대응 현황

- ESG 외부 평가 / ESG 단체나 기구 대응 / 이해관계자 대응 등

- ② 위원회 규정 제 1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ESG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.

제 12 조(의견청취권 등)

-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13 조(의사록)

간사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,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 14 조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 간사는 ESG경영부문장으로 하며,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ESG경영팀이 위원회 및 간사의 사무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5 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21 년 9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23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26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.